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6907 판결 [보증금청구의소]

---

### 재판경과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69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4 선고 2018나2015527 판결

### 전 문

**원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조용석, 허반석

**피고, 상고인B**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판결 선고** 2019. 1. 1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4. 선고 2018나2015527 판결

###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판시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N

## 이 유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판시 제1보증계약 관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보증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보증약관 제5조 제1항은 "보증채권자와 발주자가 체결한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보증채권자가 연차별 계약을 이행·완료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완료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합은 제1항에 의거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판시 제1보증계약의 계약보증서 제1면에는 보증금액, 계약명, 보증기간, 계약자 등의 표시와 함께 "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뒷면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면 이하에는 이 사건 보증약관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판시 제1도급계약 제7조 제9항은 "C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고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C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보증채권자인 원고와 발주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체결한 원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원고는 2014. 6. 30.까지 1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완료하였고, 채무자인 C은 판시 제1도급계약에 따라 위 1차수 공사에 포함된 누적 기성고 411,29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보증약관 제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C에 C이 이행·완료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는데 위 약관 조항에 의하여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로 하여금 C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고, 판시 제1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공사가 아닌 이상 위 계약 제7조 제9항에 의해서도 원고가 C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시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 중

C이 이행·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41,129,000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가지는 보증채권은 판시 제1보증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보증약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약관 제5조는 보증채권자와 발주자가 체결한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서 보증채권자가 연차별 계약을 이행·완료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완료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보증채권자와 발주자 사이의 원도급계약 외에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하도급계약, 즉 원고와 C 사이의 판시 제1도급계약도 장기계속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5조에 의하여 C이 이행·완료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증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판시 제2보증계약 관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2보증계약 체결 당시 C이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는 등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C이 피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판시 제2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판시 제2도급계약에 관하여 이미 해제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소 또는 면책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계약의 취소, 보증책임을 면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판시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